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73호 |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96호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69호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주민공람 공고 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96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13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96호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301호 (2009. 9.2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27호(2026. 3. 3.)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6. 6.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
 - 나. 면적 : 20,650.3 m²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조합명 : 학익4 재개발사업조합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206호(학익동, 석목법조빌딩)
5. 부분 준공인가일 : 2026. 3. 23.
6. 준공일 : 2026. 6. 25.

7. 준공인가의 내역

가. 정비기반시설 등

1) 도로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4	30-33 (3)	보조간선 도로	6,220 (74)	대1-1	광3-5	일반 도로	건고 제54호 (1970.02.09.)	
중로	2	18	16-19 (3)	국지도로	780 (50)	대1-14	대2-26	일반 도로	인고 제2009-301호 (2009.09.28.)	
중로	3	367	12 (3)	국지도로	65 (65)	중2-18	소2-10	일반 도로	인고 제2009-301호 (2009.09.28.)	
소로	2	9	10 (2)	국지도로	93 (44)	대2-14	소3-4	일반 도로	인고 제2009-301호 (2009.09.28.)	
소로	2	10	8-12 (4)	국지도로	50 (29)	대2-14	중로 3-367	일반 도로	인고 제2009-301호 (2009.09.28.)	
소로	3	5	6-7 (6-7)	국지도로	94 (94)	대2-14	어린이 공원	일반 도로	인고 제2013-92호 (2013.06.17.)	

※ ()는 정비구역내 연장

2) 공원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①	공원	어린이공원	학익동 262-18	2,378.5	인고 제2009-301호 (2009.09.28.)	

3) 주차장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②	주차장	노외주차장	학익동 266-2	196.9	인고 제2009-301호 (2009.09.28.)	

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지면적	16,519 m ²	건축면적	3,404.31 m ²
연면적	73,953.9178 m ²	층수/동수	지하2층~지상29층 (아파트 5동)
건폐율	20.61 %	세대수	562세대
용적률	298.82 %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2026. 3. 23.자로 부분준공인가 완료

8.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사항 등

9.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753)로 연락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69호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51호(2006. 4. 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	223,175.2	-	223,175.2	미추홀구고시 제2023-31호

다. 정비계획(변경)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반시설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계	(보행자)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비고
면적 (㎡)	기정	40,194.2	31,413.4	5,701.1	2,646.7	433.0	
	변경	40,194.2	31,413.4	5,701.1	2,646.7	433.0	

나)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25	50 (35.1-150.6)	보조간선 도로	10,450	용현동 광3-4	가정동 587-1	일반 도로		*20.06.01	
변경	광로	2	25	50 (35.1-150.6) [15]	보조간선 도로	10,450 [181]	용현동 광3-4	가정동 587-1	일반 도로		*20.06.01	
기정	대로	2	6	30 (30-33)	보조간선 도로	3,830 [246]	중앙동 광3-2	용현동 대2-10	일반 도로		*70.02.09	
기정	대로	2	10	30 (30-33)	보조간선 도로	9,200 [294]	대로 2-14 용현동	광로 2-8 동춘동	일반 도로		*66.09.02	
기정	중로	1	212	22	보조간선 도로	283	경관녹지 2 용현 524-59	대로 2-6 용현 488-92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중로	2	408	15	국지 도로	230	중로 1-212 용현 524-75	중로3-387 용현 516-9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중로	2	409	15	국지 도로	519	대로 2-10 용현 362-18	중로 1-212 용현 524-57	일반 도로		*06.04.10	
변경	중로	2	409	15	국지 도로	346	광로2-25	중로 1-212 용현 524-57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중로	2	810	15	국지 도로	45	대로 2-10 용현 352-5	소로 2-102 용현 352-13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중로	3	387	12 (12-14)	국지 도로	197	대로2-6 용현 685-12	중로 3-392 용현 416-2	일반 도로		*14.12.01	철도일부 중복결정 (16.7㎡)
기정	중로	3	392	12	국지 도로	17	중로 3-387 용현 416-3	중로 2-53 용현 536-11	일반 도로		*23.02.20	철도일부 중복결정 (119.2㎡)
기정	중로	3	716	14	국지 도로	15	중로 1-212 용현 536	소로2-2 용현 536	일반 도로		*19.03.25	철도일부 중복결정 (143.6㎡)
기정	소로	1	101	10	국지 도로	229	소로 2-12 용현 509-83	중로 1-212 용현 488-43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소로	2	93	8	국지 도로	175	중로1-212 용현 488-96	중로3-387 용현 685	일반 도로		*14.12.01	
기정	소로	2	102	8 (8-10)	국지 도로	418	중로 2-409 용현 363-15	대로 2-10 용현 509-44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소로	2	436	8	국지 도로	90	소로 2-102 용현 509-141	소로 1-101 용현 509-53	일반 도로		*13.12.16	
기정	소로	3	717	6	국지 도로	48	중로 2-408 용현 523-9	공동주택 2BL 용현 523-38	일반 도로		*12.06.25	
기정	소로	3	718	6	특수 도로	191	중로 3-387 용현 677-2	공원1 용현 685-3	보행자 전용도로		*20.11.09	

※ ()는 도로의 변화폭원,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25	광로2-25	- 도로 반영 - L=10,450m(구역 내 181m) - B=50m(구역 내 15m) - A=556,247㎡(구역 내 2,71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06.01.)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기 위함
중로2-409	중로2-409	- 연장 변경 - L=519m → 346m(감 173m) - A=7,799㎡ → 5,088㎡(감 2,71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8호(2020.06.01.)로 광로 신설에 따른 연장 변경 반영하기 위함

(2) 철도시설(변경없음)

다)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1	1-1	주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60% 이하
		높 이		34층 이하
1-2	1-2	주용도	지정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유치원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1-3	1-3	주용도	지정용도	학교시설(초등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4	1-4	주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2-1	2-1	주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4층 이하
2-2	2-2	주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2-3	2-3	주용도	지정용도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3-1	3-1	주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4층 이하
4-1	4-1	주용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4-2	4-2	주용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4-3	4-3	주용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4-4	4-4	주용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4-5	4-5	주용도	지정용도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5-1 ~ 5-6	5-1 ~ 5-5	주용도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른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6-1 ~ 6-4	6-1 ~ 6-4	주용도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른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6-5	6-5	주용도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당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의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용 적 른		8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시행 기간	기정	2006년~2018년	
	변경	1단계 : 2006년 ~ 2018년 2-1단계 : 2006년 ~ 2026년 2-2단계 : 2006년 ~ 2027년 2-3단계 : 2006년 ~ 2027년	

8)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1)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내 용
건 축 한계선	공동 주택 용지	1BL	•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도로로부터 6m~20m(경인고속도로 변 20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2BL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3BL	• 도로로부터 6m이상 • 공원, 녹지로부터 3m 이상 • 부대복리시설은 3m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		• 도로로부터 2m이상
	학교용지	기정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변경	- 삭 제 -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 도로로부터 2m이상(유치원용지 제외)
	주차장용지		• 도로로부터 2m이상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	-	182,981.0	-	182,981.0	
1BL	1-1	1-1	용현542-1일원	88,417.1	-	88,417.1	공동주택용지
	1-2	1-2	용현528-33일원	3,200.0	-	3,200.0	유치원용지
	1-3	1-3	용현524-33일원	11,000.0	-	11,000.0	학교시설용지
	1-4	1-4	용현509-53일원	650.0	-	650.0	종교시설용지
2BL	2-1	2-1	용현680-8일원	33,356.9	-	33,356.9	공동주택용지
	2-2	2-2	용현518-4일원	2,778.9	-	2,778.9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준치)
	2-3	2-3	용현523-37일원	1,000.0	-	1,000.0	동사무소
3BL	3-1	3-1	용현682-29일원	26,651.6	-	26,651.6	공동주택용지
4BL	4-1	4-1	용현685-12일원	729.9	-	729.9	근생용지
	4-2	4-2	용현685-12일원	573.1	-	573.1	근생용지
	4-3	4-3	용현685-12일원	573.0	-	573.0	근생용지
	4-4	4-4	용현488-88일원	572.9	-	572.9	근생용지
	4-5	4-5	용현488-1일원	899.9	-	899.9	치안센터
5BL	5-1	5-1	용현509-12일원	1,200.0	-	1,200.0	근생용지
	5-2	5-2	용현509-104일원	1,200.0	-	1,200.0	근생용지
	5-3	5-3	용현346-3일원	1,200.0	-	1,200.0	근생용지
	5-4	5-4	용현348-8일원	1,200.0	-	1,200.0	근생용지
	5-5	5-5	용현351-3일원	1,200.0	증) 1,153.5	2,353.5	근생용지
	5-6	-	용현352-8일원	1,153.5	감) 1,153.5	-	
6BL	6-1	6-1	용현360-9일원	1,100.0	-	1,100.0	근생용지
	6-2	6-2	용현360-11일원	1,100.0	-	1,100.0	근생용지
	6-3	6-3	용현570-20일원	1,100.0	-	1,100.0	근생용지
	6-4	6-4	용현570-5일원	1,100.0	-	1,100.0	근생용지
	6-5	6-5	용현362-17일원	1,024.2	-	1,024.2	주차장용지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변경없음)

16) 안전 및 범죄예방(변경없음)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0)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2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내용: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자료

- 공람대상: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람기간: 2026. 6. 24. ~ 2026. 7. 24. (30일 이상)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평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753)
 - 토~일, 공휴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당직실(☎032-880-42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96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도시공원 안 통로 및 숲길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6. 25.~2026. 7. 10.(15일간)
2.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 [붙임 1] 위치도 참고

예비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도로 유형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승학산 둘레길	미추홀구	관교동 517	관교동 산104-4	3,047	1.5~6	길	20	1~306
수봉공원 산책길		송의동 7-160	용현동 146-11	2,237	2~5	길	20	1~222
주인공원 산책길		도화동 648-12	용현동 685-13	1,477	3	길	20	1~148
용정공원 산책길		용현동 612-46	용현동 675	1,222	3~4	길	20	1-122
석바위 공원길		주안동 1595	주안동 1580-38	812	3~5	길	20	1~82
부여사유		공원 및 산 명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치 안내를 위해 도로명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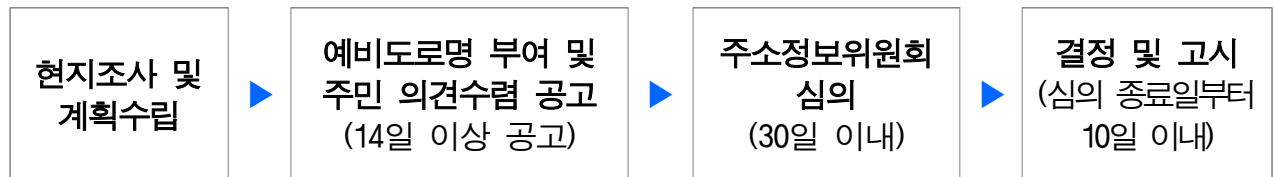
4. 의견제출

가. 접 수 처: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나. 제출방법: [붙임 2] 의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및 팩스 등 제출

다. 문 의: ☎ 032-880-4234 (FAX: 032-880-4866)

5. 도로명 부여 절차



붙임 1. 도로명 부여 위치도 1부.

2.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제출 대상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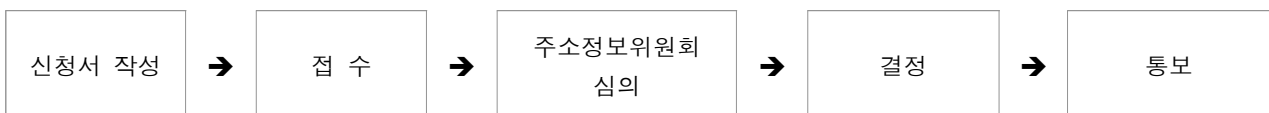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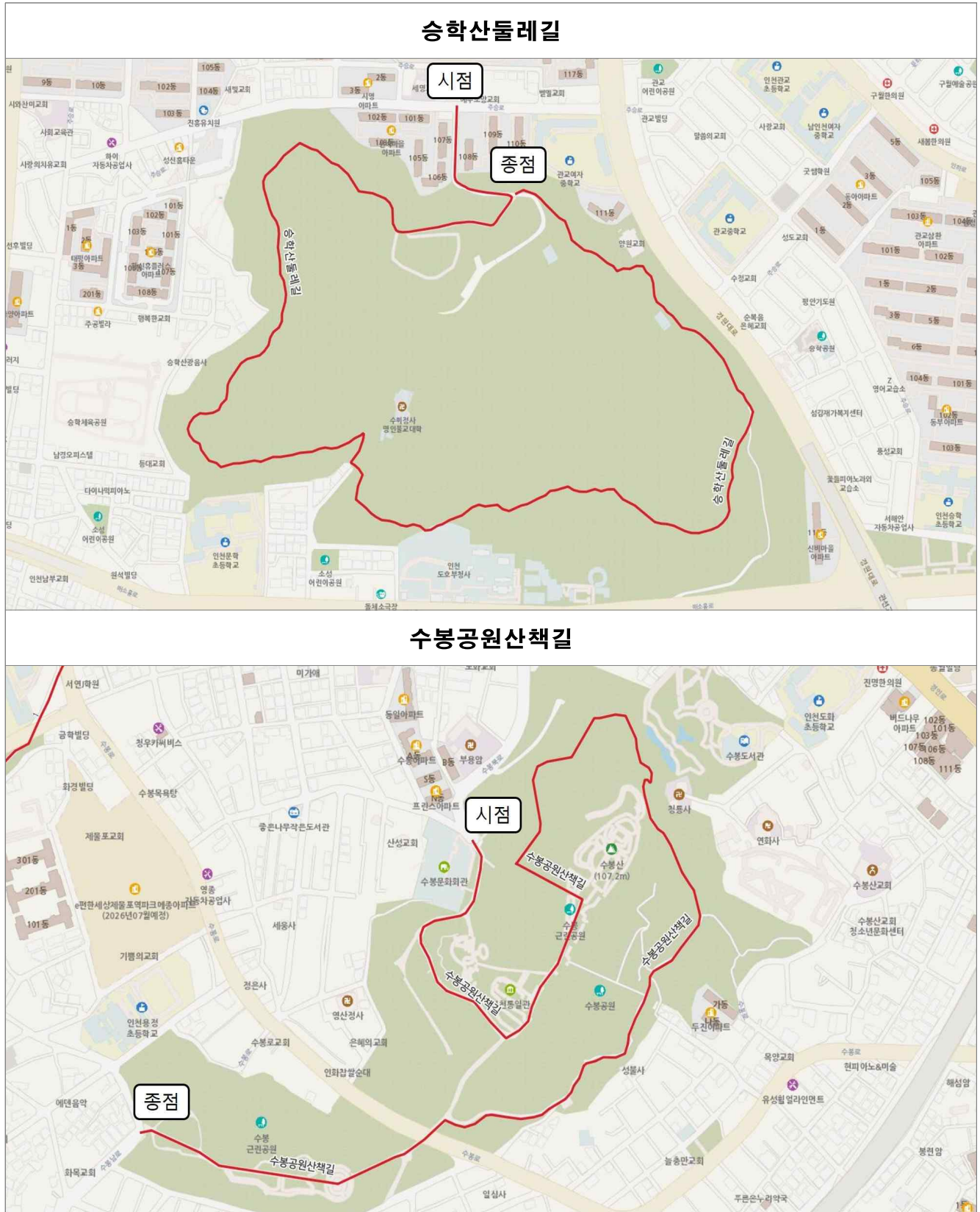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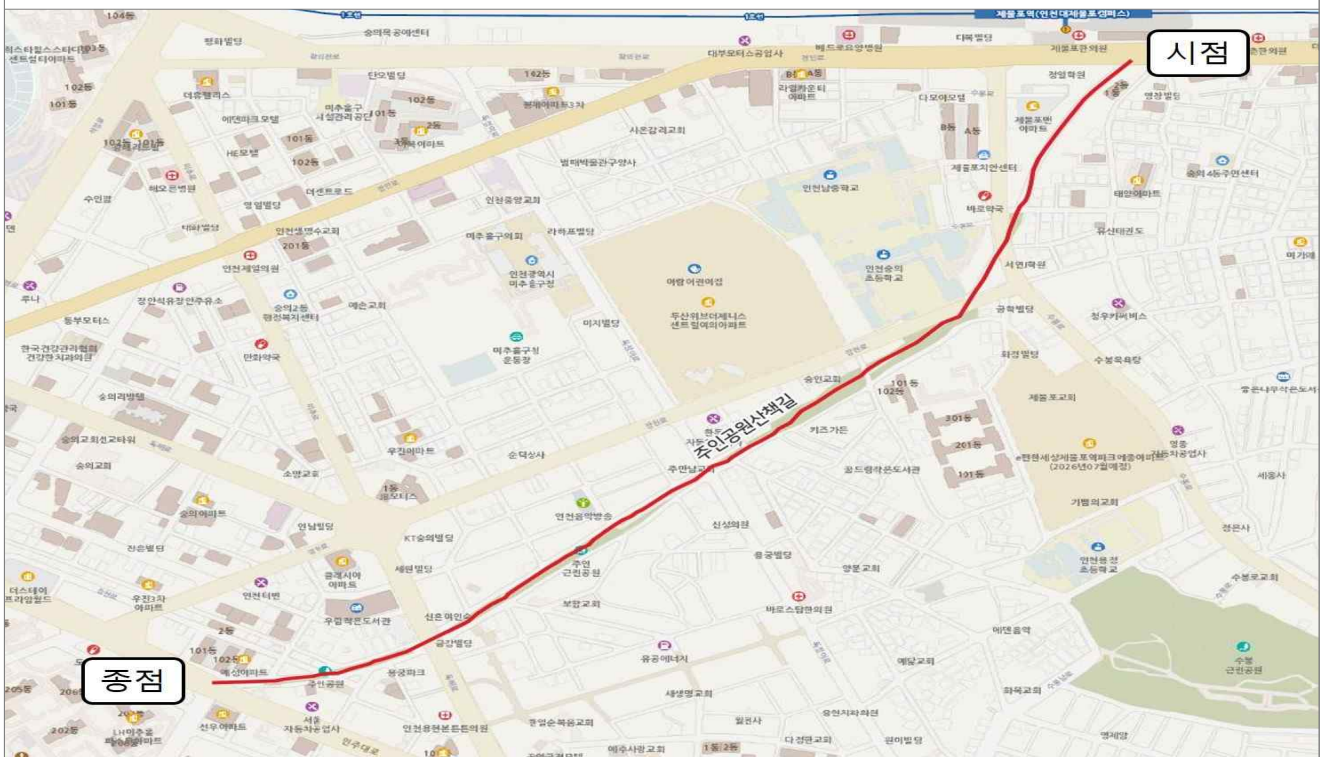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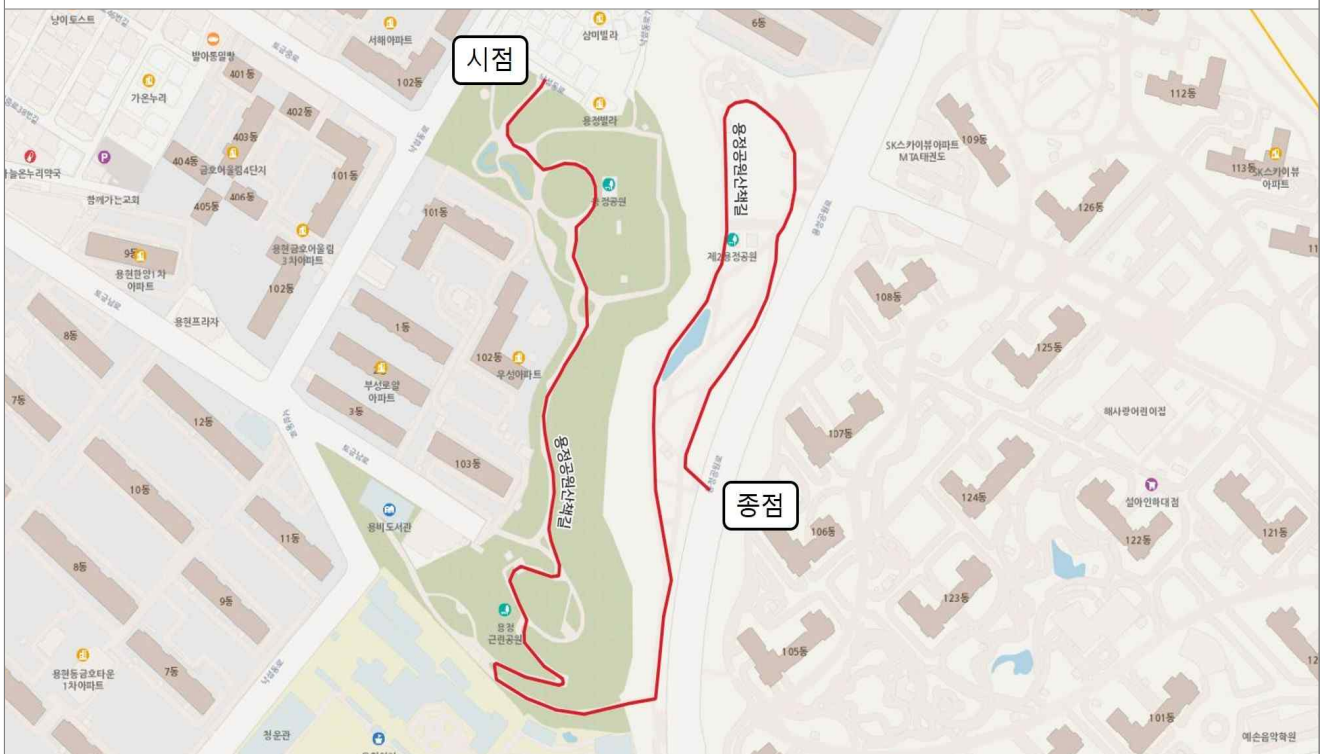
도로명 부여 위치도



주인공원산책길



용정공원산책길



석바위공원길

